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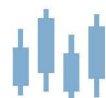
WP 21-17

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 최근 동향과 정책 시사점 II

국내 현황과 과제



허동숙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부연구위원 (dshuh@krihs.re.kr)
박경 목원대학교 명예교수 (bauiro@mokwon.ac.kr)



※ 이 Working Paper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저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연구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은 저자의 이메일로 문의하여 주시고, 인용 시에는 저자 및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차례

01 서론	05
02 국내 기업(본사)의 수도권 집중	09
03 국내 기업(본사)의 비수도권 이전 정책 및 현황	15
04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과제	25

01 서론

■ 수도권으로의 인구 및 경제력 집중 가속화

- 2019년 말부터 국민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
 - 수도권 인구는 약 2,600만으로 전체 인구의 50.3%를 차지(2021년 4월 기준)(통계청 2021b)
 - 수도권 인구는 충청권과 제주를 제외하면 모든 비수도권의 시·도에서 수도권으로의 순 이동 발생(국토연구원 2020)
 - 비수도권은 20대 젊은 층과 고령층의 수도권 순이동이 나타나며, 40대 미만 인구 감소 심각(국토연구원 2020)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1인당 지역내총부가가치도 2012년을 기점으로 두 권역의 격차가 다시 확대(산업연구원 2020)

■ 2020년도 국내인구이동 경향에 따르면, 수도권과 중부권은 순유입이 나타나고, 주로 주택(시·도 내), 일자리 관련(시·도 간) 이동 사유가 많음(통계청 2021a)

- 수도권과 중부권은 순유입, 영남권과 호남권은 순유출 발생
 - 수도권은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에서 모두 순유입되고, 영남권과 호남권은 수도권과 중부권으로 순유출됨
 - 수도권은 10~30대의 순유입이 나타나고 20대에서 가장 활발히 일어나고 있으며, 영남권은 전 연령층에서 순유출이 나타남
- 인구이동 사유는 다양한데, 시·도 내 이동은 주택이 가장 많은 반면, 시·도 간 이동은 직업이 가장 많음
 - 시·도 내 이동 사유(총 5,201건)에서 주택은 47.2%, 가족은 21.7%, 직업은 14.7% 순
 - 시·도 간 이동 사유(총 2,534건)에서 직업은 34.3%, 가족은 26.3%, 주택 21.7% 순
 - 순유입률이 높은 세종·경기의 주된 전입사유는 주택이고, 순유출률이 높은 울산·대구 등 8개 시·도의 주된 전출사유는 직업임
- 이처럼 시·도 간 인구이동의 흐름을 유발하는 주된 요인은 일자리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인구감소와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에 따른 지방소멸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으로의 기업유치와 이전을 위한 정책적 방안 고려 필요

표 1 전입사유별 이동자 수 및 구성비(2020년)

	전입사유							
	계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전체	7,735 (100.0)	1,637 (21.2)	1,795 (23.2)	3,005 (38.8)	346 (4.5)	342 (4.4)	89 (1.2)	522 (6.7)
시·도 내 이동	5,201 (100.0)	766 (14.7)	1,129 (21.7)	2,455 (47.2)	182 (3.5)	260 (5.0)	46 (0.9)	363 (7.0)
시·도 간 이동	2,534 (100.0)	870 (34.3)	667 (26.3)	550 (21.7)	164 (6.5)	81 (3.2)	43 (1.7)	159 (6.3)

출처: 통계청 2021a, 15의 표 재구성.

■ 기업(본사¹⁾)의 수도권 집중은 인구 및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요인이자 결과임

- 전국 사업체 본사·본점의 56.9%(사업체 수 기준), 64.3%(종사자 수 기준)가 수도권에 집중됨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19)²⁾
- 2019년 기준, 총 2,757개 상장사* 가운데 서울에 본사를 둔 기업은 917개로 전체의 약 40.6%를 차지하며, 수도권 전체로 본다면 72.0%의 상장사가 집중함
* KOSPI, KOSDAQ, KONEX 합계
- 2020년도 공시 대상 기업집단* 64곳 가운데 본사 소재지가 서울인 기업집단은 50곳, 수도권 전체로는 56곳이 집중됨(공정거래위원회 2020)
*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
 - 수도권 외 소재 기업집단은 포스코(경북), 현대중공업(울산), 카카오(제주), 하림(전북), 대우조선해양(경남), KT&G(대전), SM(광주), 중흥(광주) 총 8곳임
 - 그러나 카카오는 판교테크노밸리에 본사보다 큰 규모의 사무소를 갖고, 포스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KT&G는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실질적으로 수도권에 본사 기능의 사무소를 운영

■ 정부는 1999년 이후 수도권 소재 기업의 수도권 외 이전에 대해 조세감면을 강화하는 등 각종 세제 및 보조금 지원 시책을 통해 기업(본사)의 지역 이전을 추진해왔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 제기³⁾

1) 본사 기능은 일반적으로 전략책정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부문(임원회의 및 경영·기획 등)과 기업 활동 전체를 지원하는 부문(경리·총무 등)을 의미((財)九州地域産業活性化センター 2010).

2) 그러나 전 사업체 수로 본다면 수도권의 비중이 47%, 비수도권이 53%로 나타나 공장(지사·영업소)은 본사·본점에 비해 지역 분산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음.

3) 매일신문. 2000. 일본인 대기업 본사 지방이전 ‘헛구호’. 5월 11일 <https://news.imaeil.com/Society/2000051100194555178?ismobile=true> (2021년 5월 12일 검색); 일요신문. 2017. 지방 본사는 사실상 2곳뿐…30대 기업 ‘본사·사업장’ 해부. 1월 27일. https://m.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228539 (2021년 5월 12일 검색) 참조.

- 기업 이전 조세특례제도 이외에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기업도시개발,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과 기업유치 등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추진되고 있으나 수도권으로의 기업(본사)의 집중은 더욱 심화되는 추세
- 정보, 인재, 중앙정부 및 금융기관, 해외 접근성 등 수도권이 압도적인 입지경쟁력을 지닌 현실에서 세제 혜택과 입지 공급 등을 통해 비수도권으로 기업 이전을 유도하는 노력은 큰 성과를 갖지 못함
 - 김학수 외(2018)는 비수도권으로의 신·증설 투자에 대한 대규모 세액감면제도의 효율 성과 효과성에 회의적 견해 피력

■ 최근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라 급변하는 기업환경 속에서 기업의 분산오피스, 위성오피스(satellite office) 운영전략 등은 지역으로의 기업유인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올 가능성 증대

- Florida(2020)는 코로나19 이후 본사의 입지는 대도시 중심부로의 집중과 교외로의 분산, 소위 허브앤스포크(hubs-and-spokes)가 동시에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
 - 기업 본사는 여전히 대도시 중심부에 머물지만, 백오피스(Back Office)와 같은 형식으로 교외에 위성 오피스를 구축하여 원격 근무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선호하는 추세에 대응
 - 한편 이러한 스포크(spokes)에 해당하는 위성오피스 개발 지역은 값비싼 슈퍼 대도시 교외보다는 제2급 또는 3급의 더 작고 매력적인 도시가 될 것으로 전망⁴⁾
- 이와 같이 기업이 집중과 분산의 전략을 동시에 활용함에 따라 지역으로의 기업 이전 촉진을 위해서는 기존 정책의 보완과 더불어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기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다양한 업무환경을 제공하는 방안 논의 필요
 - 기업의 지방 이전이라는 목표 아래 정책 수단을 한정하기보다는 기업의 다양한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차원에서 본사 기능의 분산, 제2본사, 위성·거점오피스 설치 등의 기업 이전·분산 방식을 고려
 - 국내에서도 일부 대기업(SK텔레콤, 한화시스템, 쿠팡, 롯데쇼핑 등)은 원격근무 시스템을 구축하고 거점 오피스를 설치해 도심에 집중된 기업 업무기능을 분산시키는 업무 환경을 제공, 현재는 수도권 내 일부에서 실시(Jang and Wilkinson 2020)

■ 일본, 미국 등은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업무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위성오피스 도입을 촉진하고, 리스크 분산 및 인재 유치를 위한 본사 이전과 분산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⁵⁾

4) 아마존(Amazon)의 제2본사 입지를 두고 경쟁한 필라델피아(Philadelphia), 콜럼버스(Columbus), 인디애나폴리스(Indianapolis), 마이애미(Miami), 네슈빌(Nashville) 등이 이에 해당.

5) 박경·허동숙, 2021. 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 최근 동향과 정책 시사점 I :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워킹페이퍼 WP 21-16.

- 기업의 분산과 이전이 국내·외에서 더욱 활발히 논의되는 배경에는 디지털 기술 발전에 의해 업무수행 방식의 변화가 빠르게 수용·확산되는 환경이 마련된 점, 감염병 등의 위기 대응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그리고 지역 거점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 등이 맞물려 있음
 - 국내에서도 최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기업 이전을 위한 지원 정책을 재점검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유인중심적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임
- 이 연구는 수도권으로의 기업(본사) 집중에 따른 비수도권 이전 촉진 정책을 검토하고 기업의 비수도권 지역 이전의 가능성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고자 함

02 국내 기업(본사)의 수도권 집중

■ 2019년 기준, 전국 사업체의 본사 중 56.9%(사업체 수 기준), 64.3%(종사자 수 기준)가 수도권에 집중⁶⁾(〈표 2와 3〉 참조)

- 사업체 수에 비해 종사자 수 자료에서 수도권의 본사 집중이 더 높게 나타나 수도권 소재 기업 본사의 규모가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상장사 및 기업집단이 수도권에 집중한 데 기인
 - 반면, 비수도권의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의 본사 사업체 수 비중은 16.67%, 종사자 수 비중은 14.90%에 그침

■ 전국 사업체의 본사를 전산업, 제조업, 지식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비중을 확인하면 지식서비스업의 수도권 집중이 매우 현저하게 나타남(〈표 2와 3〉 참조)

- 2019년 기준, 제조업 사업체의 본사 비중은 비수도권이 더 높게 나타남
 - 비수도권의 본사 비중은 52.9%(사업체 수 기준), 56.6%(종사자 수 기준)를 차지
 - 2009년 자료와 비교하면, 비수도권의 사업체 수 비중은 증가했으나 종사자 수의 비중은 4%p 이상 감소
 - 특히 울산의 경우 본사의 종사자 수가 4만 8,543명에서 3만 734명으로 급감
- 한편, 지식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서울의 집중이 높아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모두에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수도권 전체로 보면 71.1%(사업체 수), 81.3%(종사자 수)를 차지
 - 지식서비스업, 특히 지식집약사업서비스업(Knowledge Intensive Business Services: KIBS)은 기업의 생산과정에 중간재로 투입되어 생산을 효율화시키고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함에 따라 지역경제의 성장과 혁신역량 제고에 큰 영향을 미침(이동희·박지혜 2013)
 - 비수도권의 지식서비스업 역량 강화를 통한 관련 산업의 효율성 개선 및 다각화에 대한 논의는 그간 많이 제기됐으나, 지식서비스업의 본사(본점) 입지는 압도적으로 수도권에 집중되고, 비수도권 모든 광역시·도에서의 지식서비스업에 속한 본사의 비중은 적음

6) 2019년도 전체 사업체 대비 본사(본점)의 비중은 사업체 수는 5만 8,413개로 전체의 1.40%, 종사자 수는 281만 2,683명으로 전체의 12.38%를 차지함.

표 2 시·도별 본사(본점) 입지 비율(%), 2009년과 2019년 비교(사업체 수 기준)

	2009년			2019년		
	전산업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¹⁾	전산업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서울	34.9	12.0	55.8	31.0	9.9	50.2
부산	6.4	5.5	5.2	6.4	6.0	5.5
대구	3.1	3.2	2.7	3.7	4.1	2.9
인천	4.2	6.2	2.6	4.1	5.5	2.7
광주	2.6	1.9	2.3	2.6	2.1	2.1
대전	3.5	2.3	4.0	2.4	1.8	3.1
울산	1.5	2.3	1.3	1.5	2.1	1.2
세종	-	-	-	0.4	0.5	0.6
경기	20.0	30.4	15.6	21.9	31.7	18.2
강원	2.1	2.1	1.4	2.4	2.1	1.7
충북	3.3	6.4	1.7	2.9	5.4	1.7
충남	3.4	6.5	0.9	3.8	6.7	1.5
전북	2.4	3.0	1.0	2.8	3.1	1.3
전남	3.1	2.9	1.4	3.4	3.0	1.6
경북	4.2	7.2	1.7	4.5	7.0	2.7
경남	4.5	7.8	2.1	5.1	8.5	2.5
제주	0.6	0.3	0.4	1.0	0.4	0.4
수도권	59.1	48.6	74.0	56.9	47.1	71.1
비수도권	40.9	51.4	26.0	43.1	52.9	28.9

주¹⁾: 지식서비스업은 정보통신업(58~6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으로 한정함.

출처: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각 연도.

표 3 시·도별 본사(본점) 입지 비율(%), 2009년과 2019년 비교(종사자 수 기준)

	2009년			2019년		
	전산업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¹⁾	전산업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서울	42.7	5.7	71.6	41.5	5.5	61.5
부산	4.9	5.0	2.3	5.3	5.3	2.5
대구	2.7	3.3	1.6	2.8	4.3	1.4
인천	4.2	7.7	1.5	4.0	6.8	1.8
광주	2.2	2.7	1.0	2.2	2.4	0.9
대전	2.2	1.7	2.1	2.6	2.0	4.0
울산	3.1	8.0	0.5	2.0	4.3	0.9
세종	-	-	-	0.3	0.5	0.4
경기	16.7	25.7	14.1	18.8	31.1	17.9
강원	1.4	1.2	0.5	1.8	1.3	0.9
충북	2.8	6.1	0.8	2.5	5.8	1.4
충남	3.6	7.9	0.4	3.2	7.9	0.9
전북	1.8	2.8	0.4	1.7	2.4	0.9
전남	2.0	2.6	0.7	2.1	2.1	0.9
경북	3.6	6.6	1.1	3.7	7.2	1.9
경남	5.6	13.0	1.1	4.8	10.9	1.4
제주	0.5	0.1	0.3	0.7	0.2	0.3
수도권	63.6	39.1	87.3	64.3	43.4	81.3
비수도권	36.4	60.9	12.7	35.7	56.6	18.7

주¹⁾: 지식서비스업은 정보통신업(58~6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으로 한정함.

출처: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각 연도.

- 2020년 기준, 공시 대상 기업집단(재벌기업) 64곳 가운데 수도권 소재 기업집단은 56곳, 이들에 속한 계열회사는 1,967개사, 자산총액은 1,964.1조 원에 달해 수도권으로의 부의 편중 심각
- 우리나라의 조선, 화학,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주력 대기업의 사업체는 울산 등의 산업도시에 소재하고 있을지라도 이들의 본사, 소위 말하는 재벌기업의 본사들은 서울에 집중하고 자산총액도 거의 2천조에 달하여 부의 집중이 뚜렷이 나타남
 - 대기업 본사의 서울 집중 경향은 정보, 인재, 금융기관과의 관련성, 글로벌 시장의 입지 등의 우호적인 조건과 전국 사업체 총괄을 위해 서울이 유리하다는 점 때문
 - 2009년 다음(Daum) 본사가 제주로 이전, 2013년 삼성 디스플레이 본사가 충남 아산으로 이전한 사례는 쾌적한 생활환경과 현장 밀착경영 등의 이유로 이전한 사례임. 그러나 현재 다음카가오는 판교 통합오피스의 규모가 더 크고, 삼성디스플레이는 용인시 기흥구로 재이전
 - 비수도권에서 대기업의 본사를 유치하는 일은 쉽지 않을뿐더러 수도권으로의 재이전시 핵심 인력의 유출 및 고급 일자리 감소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큼

표 4 시·도별 공시 대상 기업집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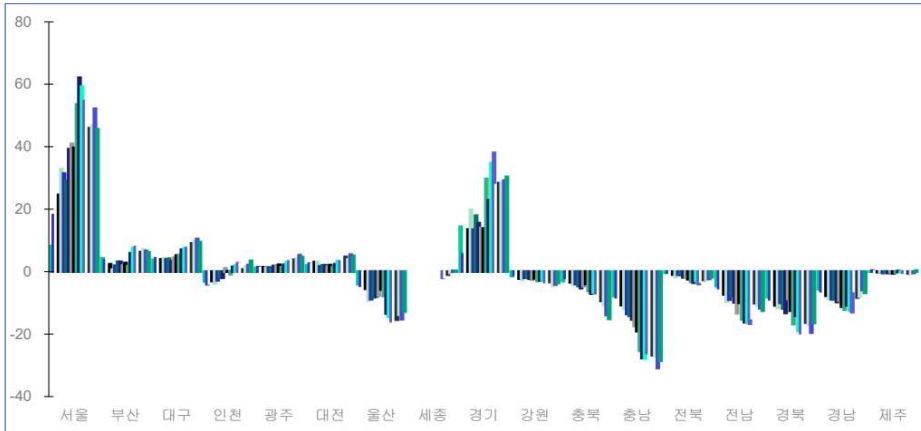
	기업집단 (수)	계열회사 (수)	자산총액 (조 원)
전국	64	2,284	2,176.1
서울	50	1,813	1,883.5
부산	0	0	0.0
대구	0	0	0.0
인천	2	12	14.9
광주	2	88	18.1
대전	1	10	11.7
울산	1	30	62.9
세종	0	0	0.0
경기	4	142	65.7
강원	0	0	0.0
충북	0	0	0.0
충남	0	0	0.0
전북	1	52	12.5
전남	0	0	0.0
경북	1	35	80.3
경남	1	5	12.3
제주	1	97	14.2
수도권	56	1,967	1,964.1
비수도권	8	317	212.0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0년 자료 재정리.

■ 지역소득의 유출입 구조를 보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비수도권에서는 광역시로 소득이 유출되는 구조를 보임(〈그림 1과 2〉, 〈표 5〉 참조)

- 서울과 경기도의 영업잉여의 순수입이 증가하는 반면, 비수도권 특히 충청권의 역외유출 규모는 더욱 확대되는 경향

그림 1 시·도별 역외소득의 순수출·입 규모 추이(2000~2018년)



출처: 통계청의 '지역소득' 각 연도.

- 충남, 충북, 울산 등의 지역소득의 역외 유출이 심한 광역시·도는 제조업의 특화가 나타나고 대부분 중추관리 기능은 지역 외에 소재한 분공장의 형태를 보여 지역에서 발생한 소득이 영업잉여의 형태로 본사 소재지로 유출됨
 - 분공장 경제(branch plant economy)는 타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이 소유하는 사업체가 지역경제의 고용을 상당 부분 담당하는 형태를 의미(Watts 1981)
 - 분공장 경제는 본사가 연구개발, 관리 및 기획을 주도하고 지방의 분공장은 생산부분을 담당, 따라서 분공장 경제의 지역은 연구개발 활동의 부재, 성장 과실의 지역 내 파급효과 미흡, 안정적인 일자리 공급의 부족, 지역 소득의 역외 유출 문제 심각
 - 〈그림 2〉와 같이, 소득의 역외 유출과 분공장 비율의 관계를 보면, 지역 사업체 가운데 분장의 비율이 높을수록 소득의 역외유출 비율도 높음
- 비수도권의 많은 산업도시들은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되 수도권에 본사를 둔 대기업의 분공장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지역소득의 유출이 크고, 지역경제의 자립성이 취약
 - 가령, 울산의 2019년 1인당 GRDP는 6,535만 원으로, 전국 평균(3,721만 원)을 크게 웃돌고, 충남(5,240만 원), 서울(4,487만 원), 전남(4,332만 원) 등과도 큰 격차를 보임
 - 그러나 울산의 1인당 민간소비(1,848만 원)는 서울(2,189만 원)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
 - 이는 울산의 지역소득이 역외로 유출되는 규모가 12조 원에 달하기 때문으로, 광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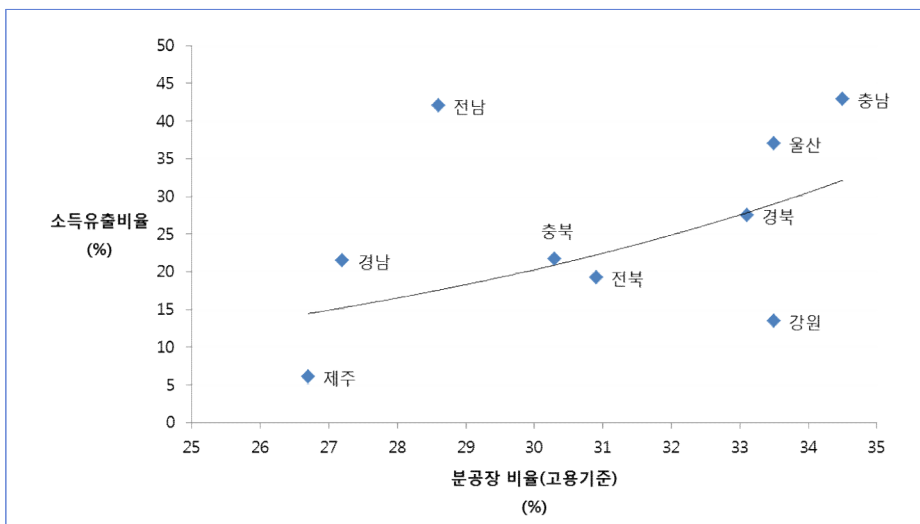
가운데 유일하게 지역외 순수취 본원소득이 (-)의 값을 가짐(<표 5> 참조)

- 충남의 경우, 수도권과 인접하고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만큼 기업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나 지역외 순수취 본원소득에서 25조 원 가량의 (-)값을 가짐

■ 지역산업 위기 극복 및 회복력(resilience)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 중의 하나는 경제 상부 기능의 확충, 즉 자립적 본사 기능의 확대를 통해 자생적 역량 강화가 중요

- 지역에 본사가 입지할 경우 분공장이 입지한 경우보다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데, 가령 고용 창출 및 우수 인재(관리직, 전문직급) 고용기회 증가, 세수 증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역내 조달의 확대와 역외 조달기업의 본사 집적화 가능성, 영업인력의 지역 내 선순환 등의 긍정적 효과 창출((財)九州地域産業活性化センター 2010)
- 홍성호 외(2011)는 충남을 사례로 본사와 공장이 함께 이전한 기업군과 공장만 이전한 기업군을 구분하여 두 집단 간 이전 후 고용효과를 분석했는데, 본사와 공장이 함께 이전한 기업군에서 지역 내 고용 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컸음

그림 2 역외소득 유출과 분공장 비율의 관계



주: 2011년 총사업체 조사 및 지역소득 기준.
출처: 박경 외 2013, 70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5 지역총소득 규모·증감률(명목) 및 지역 외 순수취 본원소득(명목)

(단위: 조 원, 전국=100, 전년 대비, %)

	지역총소득				2019년 지역 외 순수취 본원소득 ¹⁾		
	규모		증감률		지역 총소득 (A)	지역 내 총생산 (B)	지역 외 순수취 본원소득 (A-B)
	2018	2019 ^o	2018	2019 ^o			
전국	1,910(100.0)	1,941(100.0)	3.4	1.6	1,941	1,924	17
서울	469(24.6)	475(24.5)	2.9	1.1	475	433	41
부산	96(5.0)	99(5.1)	1.8	3.1	99	92	7
대구	66(3.5)	68(3.5)	1.3	2.2	68	58	10
인천	92(4.8)	96(4.9)	1.7	4.0	96	90	6
광주	44(2.3)	46(2.4)	3.3	4.1	46	41	5
대전	46(2.4)	48(2.5)	0.8	2.7	48	43	5
울산	61(3.2)	63(3.2)	0.5	3.6	63	75	-12
세종	11(0.6)	12(0.6)	4.2	8.3	12	12	0
경기	510(26.7)	509(26.2)	6.2	-0.2	509	478	31
강원	43(2.3)	45(2.3)	4.6	3.0	45	49	-4
충북	55(2.9)	56(2.9)	6.0	2.8	56	69	-13
충남	87(4.6)	90(4.6)	2.8	2.9	90	115	-25
전북	49(2.6)	51(2.6)	3.7	4.5	51	52	-1
전남	63(3.3)	63(3.2)	1.5	0.1	63	77	-14
경북	92(4.8)	93(4.8)	2.0	0.6	93	107	-14
경남	104(5.4)	108(5.5)	0.3	3.5	108	113	-5
제주	20(1.1)	20(1.0)	3.9	-0.1	20	20	0

주¹⁾: 지역 외 순수취 본원소득은 지역총소득(총본원소득)과 지역내총생산(GRDP)과의 차이이며, 양수인 경우 소득이 순유입된 것을 의미하고, 음수인 경우 소득이 순유출된 것을 의미함.

출처: 통계청 2020, 15.

03 국내 기업(본사)의 비수도권 이전 정책 및 현황

1) 기업 이전 정책

- 정부는 1999년 이후 수도권 소재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에 대해 조세감면을 강화하는 등 각종 세제 및 보조금 지원 시책 실시
- (기업 이전 조세특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200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으나, 그 이후에도 수도권 집중 현상이 크게 개선되지 않아 현재 까지 일몰기한 연장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63조)과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안에 대한 세액감면(제63조의2)

표 6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제63조) [전문개정 2020.12.29.]
 1. 세액감면 요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기업일 것
 -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할 것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 1) 중소기업이 공장시설을 수도권 안(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이하 이 조 및 제63조의2에서 “본사”라 한다)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해당 본사도 공장시설과 함께 이전할 것.
 - 2)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로 이전할 것
 2. 감면기간 및 감면세액
 - 공장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공장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

부터 6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

- 과세연도의 그다음 3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조세법 제63조의 2) [전문개정 2020.12.29.]

1. 세액감면 요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일 것
-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할 것

2. 감면대상 소득: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과 다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뺀 금액
- 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의 근무인원이 법인 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 다.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뺀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3. 감면기간 및 감면세액

- 본사 이전일 이후 본사이전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본사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
- 과세연도의 그다음 3년(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제한특별제한법」.

- 기업의 수도권 외 이전을 위한 조세특례제도의 실적과 효과에 대해 비판적 견해 존재
 - 김학수 외(2018), 김무열 외(2020) 등은 이 제도가 다른 조세지원 제도(경제특구나 산업단지, 기업도시 등)보다 감면 혜택이 크고 감면 기간이 길지만, 이런 조세지원제도를 통한 지방 이전 효과는 회의적이라고 지적
 - 김무열 외(2020)는 정책대상 기업 중에서 과밀억제권역 또는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기업은 극히 일부이고, 조세감면을 받은 기업의 상당수는 조세감면이 없는 경우에도 비수도권으로 이전했을 가능성 제시, 이런 점에서 기업의 지역 이전은 조세감면 인센티브 효과라기보다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규정하는 총량규제의 효과라고 지적
 - 한편 본사 및 공장의 비수도권 이전 법인세 감면의 매년 통계에는 과거 최대 7년 전 이전 기업들의 법인세 감면액과 기업 수도 포괄하고 있어, 매해 신규로 비수도권 이전을 추진

한 기업은 이보다 훨씬 적었을 것이라고 추정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수도권 기업에 대한 이전보조금 지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시행에 따라 2004년 처음 도입되어 현재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실시 중임**

- 지자체 및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지방 신·증설 투자(2011년), 개성공단 입주기업(2014년), 상생형 지역 일자리(2020년) 등으로 지원을 확대

* (관련 규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및 제19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부 고시)

- 지방투자기업의 입지·설비 투자에 대해 지역별·기업규모별로 투자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차등 지원
 - 입지보조금은 설비투자를 위한 투자 사업장의 토지 매입가액의 일부 지원, 설비투자보조금은 투자 사업장의 건설투자비용, 기계장비구입비용,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
- 현재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제도가기보다는 현재는 신·증설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활용되는 경향이 더 강함(산업연구원, 2020)
 - 보조금 수혜 대상 가운데, 수도권 기업의 이전에 따른 지원 규모는 2011년도에 1,204억 원, 79.3%의 비중에서 2019년도에는 313억 원, 11.3%로 비중이 감소

표 7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한도

지역 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매칭비율 (국비:지방비)
수도권 인접지역	(입지) 0% (설비) 6%	(입지) 0% (설비) 8%	(입지) 9% (설비) 11%	45 : 55
일반지역	(입지) 0% (설비) 8%	(입지) 10% (설비) 11%	(입지) 30% (설비) 14%	65 : 35
지원 우대지역	(입지) 0% (설비) 11%	(입지) 20% (설비) 19%	(입지) 40% (설비) 24%	75 : 25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등	(입지) 0% (설비) 14%	(입지) 25% (설비) 24%	(입지) 50% (설비) 34%	75 : 25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9.11.27.).

■ **(기업도시 개발) 정부는 2004년 12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을 제정하여 기업도시 시범사업을 실시, 2020년 현재, 6개 기업도시 중에 4개의 기업도시만 추진 중이며 2005년 이후 최근까지 민간으로부터 기업도시에 대한 신규 지정 신청은 없는 상황(송우경 외 2020)**

- 지식기반형(원주, 충주), 산업교역형(무안), 관광레저형(태안, 영암·해남, 무주)으로 시범 선정되어 원주, 충주, 태안, 영암·해남 기업도시만 추진 중
- 기업도시는 물리적 하드웨어 중심의 도시개발에 치중하여 전통적 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고, 기업도시와 유사한 용도·시설 개발에 따른 기업도시 간 또는 주변 개발 사업과 경쟁 초래, 유사제도와 비교 시 민간기업의 투자유인 부족 등 문제점 내포(송우경 외 2020)

- 유치기업에 대한 지원과 생태계 조성 등의 활성화 대책 보완 필요
- 기업도시의 조성·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비수도권에 정부의 지원이 수반되는 공공지원형 기업도시와 지역 제한이 없고 민간기업이 주도하여 개발 및 관리·운영이 가능한 민간주도형 기업도시로 유형 구분 필요 지적

표 8 기업도시의 개발사업시행자 및 기업유치 지원제도

항목	내용
개발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 세제 및 자금 지원 • 국유지·공유지의 처분 제한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특례 •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기업도시 정주여건의 개선	•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기금 및 예산 지원 • 선택적 규제특례 적용 •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특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혁신도시) 정부는 2019년까지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조성하여 112개에 달하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이전하여 국가균형발전 추진

- 혁신도시로의 기업 이전·유치를 위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원가공급, 건축비 및 기업유치비용 지원, 고용보조금 지원, 임대료 감면 정책 실시(〈표 9〉 참조)
- 2019년 12월 기준 1,707개사(혁신도시 내 1,425개사) 입주(국토교통부 2019)
 - 5인 미만 기업 50.7%, 5~9인 기업 21.4% 등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앵커기업의 유치 부족
 - 이전 소재지의 경우, 동일 시·군·구에서 이전한 기업이 591개사(34.6%)로 가장 많고 동일 시·도 이전 기업이 413개사(24.2%), 수도권 이전 기업은 306개사(17.9%)
- 혁신도시별 기업유치 전략을 고려했으나, 클러스터 형성 및 기업생태계 구축은 미흡
 -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업이나 중규모 이상의 기업 유입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혁신도시 내 기성기업의 유입을 위한 전략 보완 필요
 - 저렴한 지가 등 단기적인 입지 요인의 우월성 강조보다는 지자체 차원의 지원과 더불어 혁신도시의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경의 질적 개선 고려 필요

표 9 혁신도시 기업입지 지원제도

구분	지원 사항	비고
산·학·연 클러스터용지 원가 공급	국가·지자체, 이전공공기관 및 이전공공기관 출자(출연) 기업·대학·연구소	혁신도시 토지 공급 지침
	기타 실수요자	
혁특회계 세출을 통한 지원	법 제45조의2의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의 시설 건축 비용	「혁신도시 특별법」 제34조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자금지원에 필요한 비용	
	이전공공기관 연관 산업 기업 등 유치 비용에 대한 지원	
건축 비용 지원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의 시설 건축 비용 지원	동법 제45조의2 와 3
	지식산업센터 설립에 대한 지원	
고용보조금 지원	혁신도시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 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의 우선지원	동법 제45조의4
임대료 감면	혁신도시 내 입주기업·대학·연구소 등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허용	동법 제46조

출처: 류승한 외 2019, 22.

■ 이상과 같은 수도권 소재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에 대한 각종 지원조치는 주로 공장 이전에 초점을 맞춘 성격이 강하고, 대기업 본사를 포함한 대단위 기업군의 지역 이전 대책으로서는 미흡한 측면

- 금융·세제상의 인센티브는 앞에서 검토한 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이나 이전 보조금 제도를 통해 개선·보완되었으나, 지원규모나 효과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 중
- 1999년 당시 정부의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재정경제부, 1999. 8.23)’에서 강조한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을 위해 세제, 금융, 인프라, 생활여건 조성 등을 일괄하여 지원하는 통합지원제도(Comprehensive Incentive Package: CIP) 구축 또는 기업 이전과 병행하여 대학 및 금융기관의 동반 이전 등은 여전히 구체화되지 못함

2) 기업(본사)의 수도권 외 이전 현황

■ 우리나라에서 본사의 지역 이전 통계는 별도로 작성되지 않고 있는데, 이하에서는 먼저 전국 사업체 이전 동향을 먼저 살펴봄

■ 전국 사업체의 이동 현황을 보면, 수도권 내의 이동 또는 수도권에 인접한 충청권으로의 이전이 다수이고, 비수도권은 비수도권 내의 이동이 주로 발생

- 이유진 외(2020)는 2001~2018년까지 전국 사업체의 지역 간 이동 현황을 분석함
 - 동기간에 총 247만 6,484회의 사업체 입지 이동 관측
 - 최근 들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이동은 다소 증가하기는 하나, 수도권에 입지한

사업체는 대부분 수도권 내, 특히 서울의 경우 경기도로 다수 이전, 비수도권으로 이전 하는 경우 충청권 선호

- 2016~2018년 권역 간 사업체 이동 흐름을 살펴본 결과, 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비율은 56.8%, 수도권에서 강원권 1.2%, 충청권으로는 4.7%, 호남권은 1.1%, 영남권은 2.0%, 제주권 0.4% 수준(이유진 외 2020, 31의 <표 2-6> 참조)
- 반면, 동기간 각 권역에서 수도권으로 유출된 비율은 강원권 0.8%, 충청권 2.9%, 호남권 1.1%, 영남권 2.1%, 제주권 0.1%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기업 이동이 상당수 관측되어 인재 확보 등의 수도권 입지 필요성이 큰 기업의 수도권 회귀를 짐작할 수 있음(이유진 외 2020, 31의 <표 2-6> 참조)
- 이처럼 기업 이동은 주로 수도권 내의 이동 또는 수도권에 인접한 충청권으로의 기업 이전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수도권 기업의 지역 분산을 위한 각종 정책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기업 이전·유치의 결과도 상기의 사업체 이동현황과 유사
 - 혁신도시 입주기업의 이전 소재지를 파악한 결과, 혁신도시로 이전한 기업은 동일 시·군·구 및 동일 시·도에서 이전하는 기업의 비중이 높아 수도권의 첨단·혁신형 기업의 유입을 통한 지역 혁신역량 증진은 미진
 - 동일 시·군·구에서 이전한 기업이 591개사(34.6%)로 가장 많고 동일 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이 413개사(24.2%),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이 306개사(17.9%)
 - 타 혁신도시에 비해, 광주·전남 혁신도시는 기업 이전 양호. 한국전력 연관기업이 동일 시·도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다수 이전한 결과로, 한전과 지자체가 에너지산업에 특화된 에너지밸리 조성사업 추진

표 10 혁신도시 입주기업의 이전 소재지 현황

구분	기업 수	동일 시·군·구	동일 시·도	수도권	타 시·도	신규· 창업	미상
합계 (%)	1,707 (100.0)	591 (34.6)	413 (24.2)	306 (17.9)	122 (7.1)	208 (12.2)	67 (3.9)
부산	197	36	81	59	7	7	7
대구	148	23	59	29	37	0	0
광주·전남	391	19	179	118	21	18	36
울산	45	0	33	5	7	0	0
강원	48	23	3	13	4	5	0
충북	55	3	2	21	3	3	23
전북	346	91	27	24	30	173	1
경북	43	8	8	20	5	2	0
경남	434	388	21	17	8	0	0
제주	0	0	0	0	0	0	0

출처: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내부자료(2019년 12월 기준).

- 시장형 공기업인 한국전력과 같이,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에서 앵커기업으로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업의 집적과 이전을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비수도권으로의 본사 이전 동향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장 및 본사 이전에 따른 세액감면 현황을 통해 제한적이지만 간접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음

- 2007~2019년까지 공장 이전은 평균 54개사, 본사는 110개사가 세액감면 수혜
- 본사의 경우, 2007년 이후 중소기업은 매년 70개~100여 개, 일반법인은 11개~30개 내외로 지역 이전 실시, 2016년부터는 수도권 외 지역 이전 본사의 세액감면액이 큰 폭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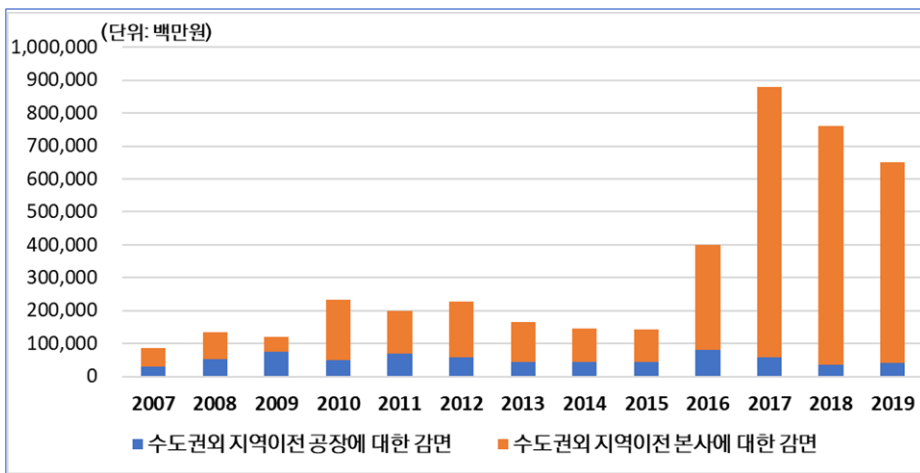
표 1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와 제63조의2에 따른 세액감면 신고법인 수(2007~2019년)

항목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수도권 외 지역 이전 공장에 대한 감면	52	67	60	50	43	56	56	50	57	55	55	54	50
중소기업	44	56	52	44	31	44	40	35	37	36	34	39	37
일반법인	8	11	8	6	12	12	16	15	20	19	21	15	13
수도권 외 지역 이전 본사에 대한 감면	82	91	96	115	108	126	106	112	128	105	128	119	110
중소기업	71	78	80	94	88	105	89	92	99	75	95	92	87
일반법인	11	13	16	21	29	21	17	20	29	30	33	27	23

주: 수도권 외 지역 이전 공장/본사에 대한 감면(중소기업, 일반법인 포함).

출처: 국세청의 '국세통계' 각 연도.

그림 3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와 제63조의2에 따른 세액감면 신고금액(2007~2019년)



주: 수도권 외 지역 이전 공장/본사에 대한 감면(중소기업, 일반법인 포함).

출처: 국세청의 '국세통계' 각 연도.

■ 기업의 특성에 따라 기업 본사의 비수도권 이전 요인은 다양

- (사례 1: 삼아제약) 의료산업 클러스터에 입지한 중견기업 사례
 - 삼아제약(직원 298명, 매출액 약 715억 원, 2019년 결산 기준)은 전문의약품 제조회사로 경기도 의왕에서 2010년 강원도 원주 문막으로 본사와 공장을 이전
 - 계속사업 영역의 확대와 더불어 2009년 12월 원주 문막에 국제 기준의 C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공장을 준공, 1년 만인 2010년 1월 본사와 공장이 이전 완료
 - 전문의약품제조업의 경우, 정부의 보조금 등 각종 재정 및 세제 지원과 함께 주변에 관련 기업의 집적 및 대학, 연구소, 기업, 지방자치단체 간에 긴밀한 산학관 협력체제, 소위 클러스터 생태계의 조성이 기업의 입지 선택에 중요한 요소
 - 강원도 및 원주시, 그리고 연세대학교는 의료산업 클러스터를 적극적으로 육성, 이러한 지원과 클러스터 생태계 조성이 삼아제약의 원주 이전에 결정적인 역할
 - “원주가 서울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인프라가 잘 발달되어 있더라고요. 교육 인프라는 물론 대형 병원도 많습니다. 특히 인구가 늘어가고 발전하는 시 중 하나여서 그런지 문화 시설도 계속 확충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라는 직원들의 인식과 만족도도 기여⁷⁾
- (사례 2: 한화에어로스페이스(구 한화테크윈)) 첨단제조 분야의 현장 밀착형 본사 이전 사례
 - 한화에어로스페이스(2,012명, 매출액 5조 3,214억[2020년 기준], 항공엔진, 첨단로봇 제조기업)는 서울에서 창원국가산업단지의 한화테크윈 창원 제2공장으로 본사 이전 결정(2018년)
 - 창원 국가산단의 경우 과거에는 기계산업에 특화된 전형적인 분공장 사례였음
 - 그러나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스마트 공장 구축, 소재·부품 협력사 및 관련 업체의 집적으로 인해 첨단제조업의 지식·기술 집약화 도모, 글로벌 인지도 향상에 따른 기업 경영전략 변화, 창원시의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 맞춤형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등 지역 산업 기반, 기업, 지자체의 변화 시도가 기업 본사 이전 유인
 - 항공기 엔진제조 분야는 1~2년 후 생산에 돌입하는 수주사업 특성상 사업의 성공을 위해 설비투자과 인력육성, 경영혁신 수반 필요, 이를 위해 영업·지원의 유기적 협조가 중요
 - 영업·생산·지원 부문의 협업 효과성 증가와 경영진의 현장 이해도 제고에 따른 사업 경쟁력 향상 기대
 - 사업장에 약 1천억 원을 투자해 1만 1천㎡ 규모의 항공 엔진부품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여 정밀가공 분야 선도 계획, 사업장 인근 20여 개 주요 협력사에도 스마트 공장 관련 기술 활용 노하우(know-how) 전수⁸⁾

7) 지역투자포털. 성공스토리. http://www.comis.go.kr/jsp/nanum_ct/bbs_success/success_list.jsp (2020년 2월 22일 검색).

8) 연합뉴스. 2019. '24시간 무인 생산 눈앞...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공장 공개. 5월 20일 <https://www.yna.co.kr/view/AKR20190520144500003> (2021년 5월 18일 검색).

- (사례 3: 카카오[구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 네오플) 창의적 환경 선호 사례 및 사업소 분산 전략 사례
 - IT 기업인 카카오와 네오플은 창의적 환경을 위해 제주도를 선택
 - 카카오는 2012년 본사 이전, 네오플은 2015년 본사 이전
 - 본부의 분리 등 조직의 이원화가 발생하고, 커뮤니케이션 관련 비용의 증가와 업무 차질이 우려됐으나, IT 기업이라는 특성을 십분 활용하여 이메일과 메신저, 전화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극복
 - 그러나 제주도의 부동산·생활물가의 상승, 산업단지 포화, 지자체 간 경쟁 등의 어려움으로 최근에는 관련 업종의 기업 이전이 추가적으로 진전되지 않았으며, 특히 우수 인재 확보의 어려움이 주요 장애물로 작용⁹⁾
 - 현재 두 회사 모두 제주 본사를 유지하되 사업소 분산 전략을 수행(카카오는 판교테크노밸리에 본사보다 큰 규모의 사무소 운영 중, 네오플은 핵심사업인 던전애파이터 모바일 개발팀 170여 명 전원을 서울 강남으로 이전 계획¹⁰⁾)
 - IT 기업은 제조업과 달리 상대적으로 입지선택의 자유도가 높고 지역 어메니티(amenity) 등 창의적 환경이 중요하나, 인력이 핵심 자산인 만큼 고급인력의 확보가 핵심 입지 요인임
- (사례 4: 오픈노트) 주 고객사(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근접 본사 이전 사례
 - IT서비스 기업인 오픈노트는 광주·전남 혁신도시로 2018년 본사 이전
 - IT서비스 분야는 시스템통합, 소프트웨어 자문 및 운영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고객의 필요를 파악하여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고객과의 긴밀한 소통이 중요
 - 오픈노트는 전력 및 전기 관련 ICT 기반사업을 중심으로 하며 한전KDN의 동반성장 우수협력사로 선정¹¹⁾, 주 고객사의 혁신도시 이전에 따라 동 입지로 이전
- 위의 사례들은 기업의 특성에 따라 이전 요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기업 본사의 이전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요자 지향의 제도개선 및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함
 - 기업의 지역 이전 유도와 정착을 위해 기반시설 및 정주 관련 기업의 필요 파악과 규제 정비, 비연고 기업의 지역 내 교류 활성화 지원 등 고려

9) news1. 2019. 제2의 'Daum'은 어디에...『땅값·인재난』에 기업들 제주 외면. 1월 23일.

<http://jeju.news1.kr/news/articleView.html?idxno=34271> (2021년 5월 20일 검색).

10) 한국경제. 2020. 넥슨 '던파 개발팀' 서울로 돌아오는 까닭. 4월 15일.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004150893i> (2021년 5월 20일 검색).

11) 일렉트릭파워(EPJ). 2020. [한전KDN 동반성장 우수협력사] 오픈노트, 가치 중심의 e-마켓플레이스 실현. 9월 7일. <http://www.epj.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750> (2021년 7월 9일 검색).

04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과제

1) 해외사례로 본 기업 본사의 입지 요인

■ 대기업 본사가 서울에 집중되는 경향은 정보, 인재, 금융의 집중, 해외 진출의 용이, 대기업 그 룹일수록 전국 사업체 통괄 위치가 서울이 유리하다는 점 때문임

-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09년 '다음'의 제주 이전이나 삼아제약(2010년 이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2018년 이전) 등, 쾌적한 생활환경이나 현장 밀착경영 등의 이유로 본사를 지방에 이전한 사례가 없지 않음
- 해외사례를 보면 인터넷 발달과 원격근무의 확산은 슈퍼 대도시의 교외나 그보다 작지만, 더 매력적인 도시에 위성오피스(satellite office) 형태로 본사 오피스의 재배치를 가져올 가능성 확대됨(Florida 2020)

■ 미국은 1950년대까지만 해도 뉴욕 및 북동부 지역에 본사가 집중했으나, 1970년대와 1980 년대를 지나면서 전국 각지, 특히 남부의 선벨트와 서부 연안으로 하이테크 지식산업 분야의 신생기업이 분산됨

- 미국은 주요 기업의 본사가 북동부 지역 집중에서 최근에는 선벨트(Sunbelt) 지역의 서비 스 지향 중소규모 도시로 분산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제2본사, 사무소 등의 유치를 위해 지역 간 경쟁도 활발하게 나타남(Adler and Florida 2020)¹²⁾
- 미국은 주(州)별로 독자적인 인센티브와 차별화된 기업유치전략 제시¹³⁾, 이러한 인센티

12) Adler and Florida(2020)의 Fortune 500대 기업 본사의 입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 본사는 1960년대에 뉴욕, 보스턴 등 북동부와 디트로이트 등 러스트벨트(Rustbelt)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1970~1980년대에 걸쳐 타지역으로 분산되 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남. 뉴욕의 본사 집중도는 감소 추세(1975년 84개→2017년 70개), 샌프란시스코만 지역은 52개 (1950년대 이후 4배 증가), 선벨트지역 도시의 성장세도 뚜렷함.

13) 예를 들어, 미시시피주는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최대 5년 동안 일자리 증가 건당 500~2천 달러 사이의 인센티브를 지급. 인디애나주는 법인소득세 납부에 대한 크레딧(credit)을 제공. 회사를 이전할 시 비용의 최대 50%까지 인정, 단 5천만 달러 이상의 신규 투자와 75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해야 함.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본사 운영에 필요한 시설 비용 또는 운영 첫 5년 동안의 직접 임대 비용의 20%를 법인소득세에서 공제. 테네시주는 이전 비용만큼 세금 공제 혜택 제공. 만약 비용이 공제할 세금보다 크다면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 웨스트버지니아주는 최대 13년 동안 기업 소득 및 사업 프랜차이즈 세금을 상쇄하기 위해 회사 적격 투자의 최대 10%까지 공제를 제공. 캔터키주는 법인세의 최대 100%를 상쇄할 수 있는 공제 혜택 제공. 루이지애나는 5년에 걸쳐 최대 25%의 시설 및 재배치 비용에 대한 보조금 제공(Wagner 2016).

브 외에도 기업의 본사 이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인재 확보, 교통 인프라, 지가, 유사·동종 기업의 집적 등의 다양한 요인이 작용(Wagner 2016)

- 최근에 인터넷 기업의 발달과 코로나19 이후 원격근무의 확대에 따라 아마존(Amazon)의 제2본사 설립 등과 같은 IT 기업 본사 또는 일부 기능(오피스)의 재배치가 활발함

■ 미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포춘(Fortune)지 게재 기업의 데이터 등을 사용하여 기업 본사 입지 분산과 그 요인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짐

- 왜, 어떤 기업이 본사를 재배치(relocation)하는가, 어디로 입지하는가(입지결정요인)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됨
- Aarland et al.(2007)는 공장과 떨어진 곳에 본사를 별도로 두는 기업은 지리적으로 떨어진 사업장을 여러 개 소유한 기업이 많고, 또한 여러 사업으로 다각화하고 있는 기업이 많다는 점을 지적
- Henderson and Ono(2008)는 본사 이전 지역의 선택에 사업서비스(경영, 법률, 회계 등)의 집적(대도시) 정도가 주요 요인임을 지적
- Davis and Henderson(2008)은 1977~1997년의 미국 사업소 센서스의 본사 조사를 이용하여, 동종 관련 기업의 본사 집적과 다양한 비즈니스·서비스의 집적이라는 두 가지 요인이 중요하다고 언급. 특히 사업서비스의 집적이 더욱 중요
- 본사의 입지 이전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Strauss-Kahn and Vives(2009)에 따르면, 비교적 규모가 크고, 기업 업력(운영 연차)이 짧고, 글로벌 기업 또는 합병된 기업일수록 본사 이전 다수
 - 이전 대상지 선택에서는 교통이 편리(특히 공항 인프라)하고, 법인세와 평균임금이 낮고, 비즈니스 서비스 수준이 높고 동종산업 특화 및 동일 분야 본사가 집중된 대도시 지역을 선호
 - 기업 본사 입지의 결정은 지역의 특수성보다는 기업 특성에 더 좌우되는데, 가령 지역에 허브공항의 유무보다는 동종산업의 본사가 집적했는가가 더 중요
 - 즉, 본사는 다른 기업의 본사와 비즈니스 서비스 집적지를 선호하며 근접성에 의한 비공식적 정보교환의 이점 추구
- 한편 Florida(2020)도 유사하게 창의적 최고급 인재풀과 교육기관, 금융·법률·회계 등 사업서비스의 발전을 본사 입지 요인으로 지적
- 이상을 정리하면 본사 입지가 유리한 지역은 사업서비스가 잘 발달되어 있고, 교통이 편리(특히 공항 설비)하고, 법인세와 임금이 낮고, 창의적 고급 인재풀과 교육기관이 존재하는

지역이며, 기업의 특성으로는 비교적 규모가 크고, 신생기업일수록 본사 이전을 용이하게 결정한다는 것임

■ 한편 일본의 관련 연구(松浦 寿幸 2015)도 시장규모가 크고, 고임금 지역, 금융업 등의 비즈니스·서비스 사업소가 집적되어 있을수록, 동종업계 타사의 본사가 집적할수록(특히 제조업), 교통이 편리할수록, 유능한 인재를 획득하기 쉬운 지역일수록 본사 입지에 유리함을 밝힘

- 이 중 시장규모나 사업서비스 집적, 고급인재 면에서 도쿄가 가장 매력적인 위치에 있지만, 제조업에 한정할 경우 오사카와 나고야에도 적지 않은 본사가 입지하며, 그 이유는 동종업종의 본사 집적이 많기 때문
- 따라서 본사 입지를 유인하는 시책으로 집적지를 어떻게 형성하고 유지할 것인가 하는 관점도 중요

■ 우리나라도 수도권에 앞서 살펴본 조건들이 잘 갖춰졌기 때문에 본사 입지가 집중함, 따라서 지역에 기업 본사 유치 위해서는 상기 조건을 재정비하여 기업친화적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

- 국내에서도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 사례가 있고, 해외사례를 검토한 결과 지역의 매력을 높인다면 지역이 본사의 입지처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됨
 - 미국의 경우 뉴욕이나 북동부에서 남부와 서부로 대규모 기업 본사 이전이 발생했다는 점, 일본의 경우 본사의 상당수는 도쿄에 집중되어 있지만 도쿄에서 진출하는 기업도 적지 않고, 제조업으로 한정할 경우 오사카나 나고야에도 본사를 둔 기업이 적지 않음
 - 마이애미(Miami)는 선벨트의 쾌적한 환경을 기반으로 젊은이가 모이는 자유분방한 도시문화와 우수한 대학기반(마이애미 대학), 각종 세제와 지원제도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으로 여러 대기업이 본사를 이전함(Florida 2020)¹⁴⁾
- 따라서 지역에 기업 본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상기와 같은 여건이 잘 발달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강구해야 하며, 지역 거점도시의 역량 집중·육성 필요

14) 마이애미는 Fortune 500대 기업에 속하는 5개 기업이 본사 입지(Lennar Corporation, Office Depot와 같은 주택 건설 부동산 회사, 그리고 World Fuel Services, AutoNation, Ryder System 등).

2)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과제

■ 기업 본사의 지역 이전을 위해서는 기존 제도의 틀을 뛰어넘는 과감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이와 관련하여 과감한 행·재정상의 지원제도 개선이 요구됨
- 장기적으로는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대학의 역할, 사업서비스의 발전, 지역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타깃(target) 기업군의 공동 이전을 유도하는 방안 모색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

■ 기업 이전 조세감면, 보조금 지급 등과 같은 인센티브 제공의 효과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제도 등 인센티브 그 자체가 문제인지, 아니면 감면 인센티브 규모가 작거나 국세로 되어 있는 법인세 제도의 문제 때문인지 검토 필요

- 기존 연구들은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한 대규모 세액감면제도의 효과성에 회의적임(김학수 외 2018)
- 그러나 해외 연구는 재정분권과 법인세 결정에 대한 재량권 확대 및 지역 간 재정인센티브 경쟁이 기업유치에 양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연구도 있음(Strauss-Kahn and Vives 2009; 名方佳寿子 2016)¹⁵⁾
- 이와 관련하여 박진 외(2018)는 기존의 지방 법인소득세를 폐지하고, 공동법인세를 도입하여 지방정부 분 공동법인세의 지역 간 차등 배분제, 중앙정부 분 공동법인세의 지역 간 차등 감면율을 적용하는 획기적인 지원제도 도입을 제안
 - 현행 지방세는 재산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재산세는 경제활동이나 기업유치와 연계가 약하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타성적으로 중앙정부의 보조(교부세나 국고보조금 등) 지원에 의존
 - 박진 외(2018)는 지자체의 세수 확대 및 기업유치 노력 증진을 위해 독일이 도입한 공동법인세(독일은 중앙과 지방이 50:50으로 나누는 공동법인세 제도 채택)를 차용하되, 지역 낙후도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식을 제안
 -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반영하여 지역 간 공동세 차등 배분, 기업의 지방분산을 위해 국세분의 지역별 차등 감면을 제안¹⁶⁾

15) 뉴욕과 경쟁하여 아마존(Amazon)의 제2본사 유치에 승리한 버지니아주는 약 30억 달러(한화로 약 3조 1천억 원)에 달하는 각종 세제 인센티브 지원을 약속함(아마존의 제2본사의 입지는 그 이상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 아마존의 제2본사 이전이 과도한 인센티브와 기업유치 경쟁을 초래했다는 비난도 있었으나, 미국은 과거부터 주별로 강한 독자적인 인센티브와 차별적인 기업유치전략을 펼쳐왔음. 이는 인제, 교통, 지가, 유사 기업 집적 등 여러 요인과 더불어 기업의 이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임(Wagner 2016).

16) 박진 외(2018, 37)는 지역을 4개(지역 1은 최낙후지역, 지역 4는 최발전지역)로 구분하고, 지역별 공동법인세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 지역 1은 법인세 36% 감면, 중앙정부 귀속 4%, 지방정부 귀속 60%; 지역 2는 법인세 24% 감면, 중앙정부 귀속 36%, 지방정부 귀속 40%; 지역 3은 법인세 12% 감면, 중앙정부 귀속 68%, 지방정부 귀속 20%; 지역 4는 중앙정부 귀속 90%, 지방정부 귀속 10%.

- 이 제안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¹⁷⁾ 재정 자율과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 촉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여지가 있음

■ 지역대학의 역할 확대와 고급인재 양성

- 고급인재 양성과 정주 여건의 개선
 -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이 공통으로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로 종업원들의 빈번한 이직과 지방에서의 고급인력의 확보 어려움이 꼽힘
 - 특히, 대기업의 경우 심각한 수준의 핵심 인력의 이탈이 예상될 경우 본사 이전을 결정하기가 어려움
 - 따라서 전문인력이 정주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대학의 획기적인 투자·육성을 통해 고급인력 양성 기반을 대폭 강화해야 함
- 지역거점대학들은 교육 기능 이외에도 기업가적 대학(Entrepreneurial university)으로 지역에 창업 및 기업 이전을 촉진하는 지식 공급자로서 기여할 필요가 있음(O'Connor and Reed 2018)
 - 대학 연구에 기초한 지식 스퍼로버(spillover)를 통해 기업가정신을 증진하고 대학은 지역 혁신 활동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노드로서 역할
 - 스웨덴의 말뫼대학은 지역의 주력 산업 기반이 붕괴된 말뫼지역에 말뫼대학을 설립하고 지자체, 대학, 기업이 적극적인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한 사례임¹⁸⁾

■ 비수도권의 기(既)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능고도화 지원책도 필요

- 비수도권에 이미 진출한 사업체가 생산공정만 담당하는 분공장의 역할에서 벗어나, 본사 기능의 생산현장 이양을 통한 고기능 공장(performance plant)으로 진화하도록 유도
 - 고기능 공장 혹은 네트워크형 분공장(networked branch plant)은 공장 소재지 외에서 소유지배를 받지만, 분공장과 달리 상당한 운영의 자율성을 갖고 높은 현장 R&D 기능과 지역 사회 연계를 발휘하는 공장을 말함(Phelps et al. 2003)
 - 그러나 우리나라 대기업의 지방 소재 공장은 이런 단계까지 이르지 못함
 - 박경 외(2013)는 충남의 소재 대기업 공장을 대상으로 본사와 공장 간의 기능 분담을 조사한 결과, 주로 제품기획, 영업, 재무, 국제업무 등 대부분의 고급관리 기능을 본사에서 담당하고 지역 소재 공장은 거의 생산기지 역할만 수행

17) 박진 외(2018)는 공동법인제 방안의 한계점으로 첫째, 현행 법인지방소득세 제도 폐지 부담, 둘째, 공동법인제 배분비율의 지역 차등화를 중앙정부가 정하기 때문에 지역의 자율성 강화에 역행 우려, 셋째, 지방정부 간 기업유치 경쟁으로 인한 효율성 달성 왜곡을 지적했으며, 이와 별개로 수도권 역차별, 차등 감면에 대한 근거 마련, 세수 감소 우려 등 논란의 여지가 있음.

18) 한국경제, 2019, 스타트업 하루에 7곳씩 창업...첨단도시로 부활한 '말뫼의 기적', 10월 23일.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9102228261> (2021년 5월 20일 검색).

- 기존의 기업(토착 또는 유치기업)을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해 가면서, 유치 후 지원을 확충하여 생산거점으로부터 연구개발 기능, 전략거점(본사 기능)으로 기능고도화로 이어지도록 투자를 유발하는 전략도 필요함(일본 규슈 구마모토현 사례, (財)九州地域産業活性化センター 2010)

■ 재택 원격근무 시대에 대응한 여건의 조성

-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은 업무환경의 변화를 야기하여 원격근무 시스템과 재택근무가 빠르게 정착, 기업은 분산오피스 설치 증가, 이 경향을 반영하여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분산오피스를 유치하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음
- 일본은 기업의 업무연속성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 BCP)¹⁹⁾의 작성과 백업 기능의 정비를 통한 위성 오피스의 지방 재배치, 유연 고용제 확대와 거주지를 가리지 않는 기업의 채용제도 확산, 텔레워크 거주지가 되는 지방의 일·생활 환경 개선 및 정보인프라 개선 등의 종합대책을 수립, 도쿄권 본사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함(박경·허동숙 2021)

■ 지역 기업 활성화(또는 수도권 기업의 지역 이전)를 위해 정주 기능 개선, 육아 및 교육 등 복합적 정책이 요구됨

- 실제 기업의 정착을 위해 문화·여가·육아·교육 서비스 등 정주 여건의 개선이 수반될 필요
- 자녀와의 동반 이주가 필요한 근로자가 많은 경우 교육서비스의 질이 중요한 요소인데, 사교육에 대한 보다 개방적 태도를 통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다양한 교육서비스 혜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
 - 예로, 전북 순창의 옥천인재숙은 순창군이 운영 주체로서 군내 중·고등학교에서 선발된 2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서울과 광주에서 온 강사들로부터 과외수업 시행²⁰⁾
 -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자체의 지속적인 투자로 인해 인근 도시에서 순창군의 학교로 유입되는 사례도 증가

■ 기업 본사 이전의 대책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연구 필요

- 우리나라에서는 기업 본사 이전의 동향과 이전 요인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가 희소함
- 향후 코로나19 이후 기업 본사 오피스의 재배치 동향이나, 기업 본사 부문의 이전에 관한 데이터 확보, 이전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등이 필요함

19) 업무연속성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 BCP)은 대규모 감염병 등 위기 상황에서도 기업이 핵심적인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위기대응체계를 말함(산업통상자원부 2020).

20) 월간조선. 2008. 공교육 현장까지 경쟁으로 살아 움직인다. 5월호. 서울: 월간조선.

참고문헌

[한글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2020. 2020년도 공시 대상 기업집단 64곳 지정. 2020.5.4. 보도자료. 세종: 공정거래위원회.
- 국세청. 각 연도. 국세통계. 세종: 국세청.
- 국도교통부. 2019.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내부자료(2019년 12월 기준).
- 국토연구원. 2020. 인구의 지역별 격차와 불균형. 균형발전 모니터링 & 이슈 Brief 제1호. 세종: 국토연구원.
- 김무열·권성오·최승문. 2020. 2020 조세특례 심층평가(Ⅲ):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세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김학수·김진영·지해명·최동욱. 2018.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지방 신증설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세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류승한·김주훈·이영선. 2019. 혁신도시 기업유치를 위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요인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 박경·박창귀·이동훈·이민정. 2013. 충남경제 선순환 활성화 방안. 공주: 충남연구원.
- 박경·허동숙. 2021. 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 최근 동향과 정책 시사점 I :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워킹페이퍼 WP 21-16. 세종: 국토연구원.
- 박진·이선화·김진영·류덕현·송헌재. 2018. 재정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제 개편방안 연구. 한국경제포럼 11(1): 85-112.
- 산업연구원. 2020. 지역투자 활성화와 균형발전. 균형발전 모니터링 & 이슈 Brief (제4호). 세종: 산업연구원.
- 산업통상자원부. 2019. 산업부, 올해 지방투자보조금으로 민간투자 1조 4천여억원 건인 지역일자리 3,350개 창출 유도(2019.11.27. 보도자료). 세종: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 2020. 감염병 발생 시 기업의 업무연속성 계획 가이드라인(2020.04.). 세종: 산업통상자원부.
- 송우경·정만태·하정석·조성민. 2020. 기업도시의 추진현황과 발전방향. 세종: 산업연구원.
- 이동희·박지혜. 2013. 국내 지식집약사업서비스업의 입지패턴과 정책 시사점. 정책자료 2013-196. 세종: 산업연구원.
- 이유진·한영숙. 2020. 기업의 입지 이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수원: 경기연구원.
- 통계청. 2020. 2019년 지역소득(잠정), 12월 23일. 보도자료.
- _____. 2021a. 국내인구이동통계. 1월 26일. 보도자료.
- _____. 2021b. 주민등록인구현황. 대전: 통계청.
- _____. 각 연도. 전국사업체조사. 대전: 통계청.
- _____. 각 연도. 지역소득. 대전: 통계청.
- 홍성호 외. 2011. 충남 유치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 분석과 기업유치정책의 개선방안. 충남연구원.
- Jang, J. and Wilkinson, R. 2020. 서울 오피스 시장은 대대적인 개편 진행중: 서울 오피스 시장 전망과 주요 동향. Toronto: Colliers.

[홈페이지]

지역투자포털, 성공스토리. http://www.comis.go.kr/jsp/nanum_ct/bbs_success/success_list.jsp (2020년 2월 22일 검색).

[영문자료]

Aarland, K., Davis, J. C., Henderson, J. V. and Ono, Y. 2007. Spatial organization of firms: the decision to split production and administration. *Rand Journal of Economics* 38, no.2: 481-495.

Adler, P. and Florida, R. 2020. Geography as strategy: the changing geography of corporate headquarters in post-industrial capitalism. *Regional Studies* 54, no.5: 610-620.

Davis, J. C. and Henderson, J. V. 2008. The agglomeration of headquarters.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38, no.5: 445-460.

Florida, R. 2020, The Uncertain Future of Corporate HQs, *Harvard Business Review, Economics & Society*. September 18, <https://hbr.org/2020/09/the-uncertain-future-of-corporate-hqs> (2021년 5월 21일 검색).

Henderson, J. V. and Ono, Y. 2008. Where do manufacturing firms locate their headquarters?. *Journal of Urban Economics* 63, no.2: 431-450.

O'Connor, A. and Reed, G. 2018. Theorizing the University Governance Role in an Entrepreneurial Ecosystem. In *Entrepreneurial Ecosystems: Place-Based Transformations and Transitions*, O'Connor, A., Stam, E., Sussan, F. and Audretsch, D.B.(eds.), 1-100. Berlin: Springer.

Phelps, N. A., MacKinnon, D., Stone, I. and Braidford, P. 2003. Embedding the multinationals? Institutions and the development of overseas manufacturing affiliates in Wales and North East England. *Regional Studies* 37, no.1: 27-40.

Strauss-Kahn, V. and Vives, X. 2009. Why and Where Do Headquarters Move?.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39, no.2: 168-186.

Wagner, L. 2016. Why Corporate Headquarters Relocate, Trade & Industry Development(2016. 3. 10.) <https://www.tradeandindustrydev.com/industry/why-corporate-headquarters-relocate-11394> (2021년 5월 21일 검색).

Watts, H.D. 1981. *Branch Plant Economy: A Study of External Control*. London: Longman.

[일본어자료]

(財)九州地域産業活性化センター(·(재)규슈지역산업활성화센터). 2010. 규슈본사 R&D기능 확충방안 조사보고서(九州本社R&D機能拡充方策調査報告書).

名方佳寿子. 2016. 기업의 본사 이전 행동과 이전처의 결정 요인에 관한 분석: 외형 표준과 세 제도의 영향과 지역간 격차의 관점에서(企業の本社移轉行動と移轉先の決定要因に関する分析: 外形標準課税制度の影響と地域間格差の視点から). 獨立行政法人 經濟産業研究所, RIETI Discussion Paper Series 16-J-055.

松浦寿幸. 2015. 일본 기업의 본사 부문의 입지에 대하여-본사 이전의 결정 요인과 생산성에 의한 선별(日本企業の本社部門の立地について-本社移轉の決定要因と生産性による選別). 『日本經濟研究』 72: 73-93.

[뉴스기사]

- news1. 2019. 제2의 'Daum'은 어디에... '땅값'·'인재난'에 기업들 제주 외면. 1월 23일.
<http://jeju.news1.kr/news/articleView.html?idxno=34271> (2021년 5월 20일 검색).
- 매일신문. 2000. 말뿐인 대기업 본사 지방이전 '헛구호'. 5월 11일.
<https://news.imaail.com/Society/2000051100194555178?ismobile=true> (2021년 5월 12일 검색).
- 연합뉴스. 2019. "24시간 무인 생산 눈앞"...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공장 공개. 5월 20일.
<https://www.yna.co.kr/view/AKR20190520144500003> (2021년 5월 20일 검색).
- 월간조선. 2008. 공교육 현장까지 경쟁으로 살아 움직인다(5월호).
<https://monthly.chosun.com/client/news/print.asp?ctcd=&nNewsNumb=200805100040>
- 일렉트릭파워(EPJ). 2020. [한전KDN 동반성장 우수협력사] 오픈노트, 가치 중심의 e-마켓플레이스 실현. 9월 7일.
<http://www.epj.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750> (2021년 7월 9일 검색).
- 일요신문. 2017. 지방 본사는 사실상 2곳뿐...30대 기업 '본사·사업장' 해부. 1월 27일.
https://m.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228539 (2021년 5월 12일 검색).
- 한국경제. 2019. 스타트업 하루에 7곳씩 창업...첨단도시로 부활한 '말뚝의 기적'. 10월 23일.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9102228261> (2021년 5월 20일 검색).
- 한국경제. 2020. 벅스 '던파 개발팀' 서울로 돌아오는 까닭. 4월 15일.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004150893i> (2021년 5월 20일 검색).

[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2021년 5월 18일 검색).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2021년 5월 18일 검색).

국토연구원 Working Paper는 다양한 국토 현안에 대하여 시의성 있고 활용도 높은 대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실험정신을 가지고 작성한 짧은 연구물입니다. 투고된 원고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 발간되며, 외부 연구자의 투고도 가능합니다. 공유하고 싶은 새로운 이론이나 연구방법론, 국토 현안이나 정책에 대한 찬반 논의, 국내외 사례 연구나 비교연구, 창의적 제안 등 국토분야 이론과 정책에 도움이 될 어떠한 연구도 환영합니다.

투고를 원하시는 분은 국토연구원 연구기획·평가팀(044-960-0582, jhkim@krihs.re.kr)으로 연락주시시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WP 21-17 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 최근 동향과 정책 시사점 II : 국내 현황과 과제

연 구 진 허동숙, 박경
발 행 일 2021년 8월 3일
발 행 인 강현수
발 행 처 국토연구원
홈 페이지 <http://www.krihs.re.kr>

© 2021, 국토연구원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한국출판인협회에서 제공한 KoPub 서체와 대한인쇄문화협회가 제공한 바른바탕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